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이훈기 · 김남근 · 김 윤
안도걸 · 이인영 · 이해민
황운하 · 김용만 · 김태선
맹성규 · 이용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3차례 「상법」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, 독립이사 비율 강화,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, 집중투표 의무화, 전자주주총회 도입,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.

그런데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임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은 상장회사가 이사·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, 약력, 추천인 등 기본적인 사항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,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음. 특히 독립이사의 경우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, 독립성 판단 근거, 겸직 여부 등 주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, 독립이사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이사·감사 후보자에 관한 공시사항에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, 독립성 판단 근거, 겸직 여부 등 후보자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, 주주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, 최근 독립이사 제도 강화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542조의4).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2조의4제2항 중 “이사·감사 후보자의 성명, 약력, 추천인, 그 밖에”를 “이사·감사 후보자의 성명, 약력, 추천인,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, 독립성 판단 근거, 겸직 여부 등 그 밖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42조의4(주주총회 소집공고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상장회사가 이사·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<u>이사·감사 후보자의 성명, 약력, 추천인, 그 밖에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542조의4(주주총회 소집공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상장회사가 이사·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<u>이사·감사 후보자의 성명, 약력, 추천인,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, 독립성 판단 근거, 겸직 여부 등 그 밖에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